

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의안 번호	756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1999. 4. 8.
 발 의 자 : 김명환 의원
 외 8인

1. 제 안 이 유

-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시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시행하고 있으나
 - 회의규칙에 질문요지서의 집행부 송부(도달) 시간이 질문시간 24시간 전으로 촉박한 시간으로 되어 있어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자료 준비에 어려움이 많고, 의회로서는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정확하고도 충분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워
 - 시정질문 요지서의 집행부 송부(도달) 시간을 앞당겨(48시간전) 충실한 시정질문과 답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,
-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가 개정 ('98. 10. 12)되어 상임위원회 명칭 및 직무와 소관 사항이 변경되었으나, 본 규칙 조문중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 개정 이전의 상임위원회 명칭 조문이 있어 이를 현행에 맞게 개정 코자함.

2. 주 요 골 자

- 시정질문 요지서를 “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”를 “질문시간 48시간 전 까지” 시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는 것으로 개정(안 제66조)

-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때 의장은 “의회운영위원회”와 협의하는 것을 “각 상임위원회 위원장”과 협의하는 것으로 개정(안 제20조의4)
- 의장이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“의회운영위원회”의 동의를 얻는 것을”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”의 동의를 얻는 것으로 개정(안 제73조)

3. 참고 사항

○ 관련법규

-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동법 제37조의2
- 안산시의회위원회조례(제2조 및 제3조)

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
안산시의회회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0조의4(위원회의 제출의안) 중 “의회운영위원회와”를 “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”로 한다.

제66조(시장등의 출석요구) 제4항중 “24시간”을 “48시간”으로 한다.

제73조(경호) 제1항 중 “의회운영위원회”를 “각 상임위원회 위원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